

KCS 57 40 05 : 2017

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

2017년 8월 일 제정

<http://www.kcsc.re.kr>

목차

KCS 57 40 05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	1
1. 일반사항	1
2. 자재	1
3. 시공	2

KCS 57 40 05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

1. 일반사항

1.1 적용범위

- (1) 이 시방서는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.
- (2)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,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이방서,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.
- (3)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콘크리트 재질은 이 시방서 KCS 57 10 15 기타공사(1.1.1) 콘크리트공사를 준용하여 설치한다.
- (4) 정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펌프, 밸브 등 각종 자재 및 기계·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0 기계공사, KCS 57 90 00 전기공사, KCS 57 95 00 계측공사 관련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.
- (5) 내용
 - ① 정류(도류)벽 설치
 - ② 경사판 설치
 - ③ 완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
 - ④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
 - ⑤ 표면세척장치
 - ⑥ 상수도용 여과사 투입
 - ⑦ 안트라사이트 투입
 - ⑧ 입상활성탄 투입
 - ⑨ 용존공기부상(DAF) 처리시설
 - ⑩ 오존처리시설
 - ⑪ 막여과 처리시설
 - ⑫ 부대공사

1.2 참고기준

내용 없음.

1.3 용어의 정의

내용 없음.

2. 자재

2.1 자재 일반

- (1) 자재반입시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,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에게 보고한다.
- (2) 정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, 특히 물에 접하는 재료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
2.2 시험 및 검사

- (1)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(KS)을 표준으로 하고,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서의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의 지시에 따른다.
- (2)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(3)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.

3. 시공

3.1 시공 일반

- (1) 시공자는 설계도서,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, 시공계획서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.
- (2)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, 품질향상,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,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, 기계기구등에 대한 정리·정돈, 점검·정비,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시공자는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3.2 공정관리

- (1)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,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(2)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에게 제출,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3.3 기타

세부 시공사항은 정수처리시설의 각 항별 해당시방서에 따른다.